

『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「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」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,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장의 필요에 따라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토록 되어 있는 것을 「각 부문별 관련기관·단체장」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도 기획관실-2040(‘06.4.3)호의 「200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대상선정의 객관성을 유지코자 함
-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 내용 중 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」에 대한 표현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는 규정을 「각 부문별 관련기관·단체장」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